

『서울시설공단』

정관 개정 사항 보고

□ 보고 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②항
(정관 변경시 시장 인가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)

□ 개정 사유

- 2017년 단체교섭 보충협약서에 따라 서비스직을 일반직으로
전환하는 정원표 개정

□ 개정 절차

- 이사회 의결('18.3.27 완료)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
및 시장 인가 후 공포·시행

【 별 첨 】 정관 개정 세부내용

정관 개정 세부내용

1. 개정사유

가. 2017년 단체교섭 보충협약서에 따라 서비스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
정원표 개정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표(별표2)서비스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통합

- 총 정원 증감 없이 서비스직 정원 495명을 일반직 '3급 이하' 정원
으로 통합 편성
 - 일반직 내에 “사회복지직군”을 신설하고 ‘3급 이하’ 정원 조정
(기준) 2,147명 → (조정) 2,642명

나. 부칙신설 : 제1조(시행일) : 공포일부터 시행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☑ 2017 단체교섭 보충협약서 (2017.12.29)

- 2017. 7. 1. 자로 서비스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직군·직렬은 '사회복지' 로 하고
'운전' 과 '상담' 직종을 둔다.

나. 절 차 : 이사회 의결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
시장인가 후 공포·시행

4. 개정사항

< 별표 2 > 현 행

정 원 표

【총 정원 : 2,718명】

임원 및 일반직, 서비스직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임원	일 반 직				서비스직
	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	
정 원	2,718	6	2,217	25	45	2,147	495

※ 부서별 정원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

< 별표 2 > 개 정 안

정 원 표

【총 정원 : 2,718명】

임원 및 일반직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임원	일 반 직			
	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
정 원	2,718	6	2,712	25	45	2,642

※ 부서별 정원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